

제목 : Feinberg, <Harm to Oth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ch4. “Failures to Prevent Harm” 요약

요약자: 이한

120

나쁜 사마리아인 상황

1. 낯선이는 위험에 빠진 사람과 아무런 “특별한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2. 낯선이는 위험에 빠진 당사자가 지각하지 못한 위험을 경고하거나, 구조를 하거나, 도움을 부르거나, 경찰에게 알리거나, 추가적인 상처를 막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3. 위 2의 일은 낯선이가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비합당한 비용을 야기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4. 그 결과로 당사자는 해악을 입었다. 또는 해악의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5. 이러한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사자는 “나쁘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

129

만일 해악 방지를 하지 않음(omission-누락)이 해악이 뒤따르는 원인이라면, 엄밀하게 정식화된 해악 원리 하에서 이미 정당하게 금지가능한 것이며, 나쁜 사마리아인 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아무런 수정도 해악 원리에 가해지지 않아도 된다. 만일 해악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그와는 달리, 해악을 가하거나 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면, 국가가 해악 방지 하지 않음을 금지하는 입법을 적절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수한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129 나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제기되는 반대 논변은 다음과 같다.

1. 강제된 자선이라 안된다 논변 (의무를 넘어서는 선한 행위를 형벌로 강제하게 된다.)
2. 선긋기 어려움 논변 (일단 이 법을 허용하게 되면, 어느 사람까지 구할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3.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논변

(130)

4. 인과관계에 근거한 논변

- a. 인과관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변 - 단순히 해악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야기하는 것에는 명확한 개념적 구분이 있다. 그래서 해악을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만이 해악을 야기할 수 있고, 부작용은 기껏해야 해악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한 것 뿐이다.
- b. 도덕적 중요성 논제 - 사람들이 그들이 야기한 해악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에는 특별한 도덕적 엄격성이 존재한다.

130

2. 적극적 도움(active aid)과 호의상 자선(gratuitous benefit)의 혼동

첫번째 논변, 즉 강제된 자선이라 안된다는 논변은 적극적(능동적) 도움과 호의상 자선을 혼동

한다. 즉, 어떤 행위가 적극적인 것인 한, 이러한 논변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러한 행위는 언제나 단지 호의상의 자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의무는 물론이고 아무런 도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혼동은 여러가지 상호관련된 형태를 취하는데, 그 모든 혼동들은, 외관상 뻔한 소리인, 해악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희생자에게 자선을 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명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부터 도출된다.

131 이러한 주장들을 보면, 특별한 도덕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갖는 도덕적 권리주장은 오직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하는 진술되지 아니한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어의 의미로부터 무슨 실질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권리주장 자체가 타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서 전무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따금씩 보는 지인이 그의 집을 페인트칠하는데 하루를 써달라고 하고 내가 그걸 해주면 이는 호의상의 혜택을 주는 것일 뿐, 그가 나에게 무슨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도움을 받을 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페인트칠 사례는 분명히 ‘큰 호의상의 혜택’을 구하는 것이지만, 웅덩이에 빠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호의적 자선’을 근처의 거니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완전한 재앙을 피하기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133 특수한 관계의 의무에만 그렇다는 주장도 왜 나쁜 사마리아인의 경우에는 나름의 고유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반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상호적인 의존성, 기대, 의무, 권리주장을 갖는 그런 관계가, 한 쪽이 거대한 위험에 빠지고 특정될 수 있는 제한적인 당사자인 한 쪽이 손쉽게 그 위험에 구해줄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면, 역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4 불완전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도 없고 상관적인 권리주장을 구체적으로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것이 능동적인 조력의 의무 형태이기 때문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의 의무가 왜 “불완전한” 이유, 즉 나에게 대하여 상관적 권리주장을 갖고 있는 확정된 의무수혜자를 결여하고 있는 이유는, 조정의 문제(a problem of coordination) 때문이며, 이 문제는 만일 존재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부자들 사이에 설정 규칙을 통해 정의함으로써 협동적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그러나, 웅덩이에 빠진 아이의 사례는 이와 같은 조정 문제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위급상황은 명확하고 현존하며, 도움을 하나의 희생자에게 명확하게 주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자의 의무를, 그가 줄 수 있는 도움을 동등하게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는 문제로 환원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러한 오류의 근본 원인은 바로, 해악을 가하는 것과 단순히 혜택을 주지 않는 것 사이에 사기꾼 같은(tricky) 구분을 다짜고짜 그어놓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135

여러 논자들은 단순히 혜택을 ‘주지 않는 것’과 해악을 가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논지를 편다. 그리고 이러한 논지의 잘못은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benefiting), 자선을 한다라는 개

념에 놓여 있다.

136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 전의 상태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자가 위험에 처한 당사자의 이익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피구조자의 이익 곡선을, 피구조자가 위험에 빠지기 전의 조건이라는 기준선보다 더 위로 올려놓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혜택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판단에서 근본적인 것은 기준선baseline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의 문제다. 기준선은 (i)피구조자가 위험에 빠지기 전인가, 아니면 (ii) 위험에 빠지고 나서 다른 이익 조그만 도움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데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못받는 상황인가, 아니면 (iii) 다른 이익 조그만 도움으로 큰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마땅하게 받을 대우라면 그러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기준선이 되는가.

요약자의 결론은 (iii)이다. 이것은 착취의 문제나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려내는 방법과 동일하다. 즉, 기준선은 ‘순수히 물리적이고 사실적인 표지들에 의해서’ 구성될 수 없다. 이 점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결코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어린이가 여행캠핑을 갔으면 그 여행 캠프의 인솔자는 어린이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구해내야 한다. 구해주는 것이 마땅한 대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아무 일도 안하는 것은 해를 가한 것이다. 만약 순수 물리적 작용으로 기준선을 판단한다면, 이 경우 여행 캠프 인솔자는 자신이 빠트리지도 않은 어린이를 구해주는 행위를 ‘순전히 호의상의 자선을 주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그 ‘자선을 주지 않는 것’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는 ‘특별한 계약 관계’나 ‘보호자 관계’가 기준선을 설정했다. 그렇다면 낮선이와 위험에 빠진 이 사이에도 마땅한 대우의 기준선이 무엇인지 직접 보아야 하지, 순수 물리적 작용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말장난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즉, 마땅한 대우의 기준선이 어디인가의 문제를 아무렇게나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정한 기준선을 전제로 해서 ‘자선을 주는 것’이다, 아니다, 말하는 것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137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는 의무와 책무는 특별한 관계와 사전의 약정으로부터 나온다. 이 특수하고 일반적인 도덕적 관계는 해악과 자선에 관한 우리의 관념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만일 나쁜 사마리아인이 웅덩이에 빠진 사람에 대하여 해악을 가하였다면, 단지 그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우리가 해악으로 여기기 때문만이 아니라, 희생자가 낮선이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동료 인간이라는 것만으로도 가해지는 해악이 심대할 때에는 의무를 근거지우기에 충분하다.

이 점을 강조해주는 것은, 주지사가 사면을 요구한 사형수의 청원을 거부하는 것이다. 주지사는 단순히 ‘혜택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형수는 사면받을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준선 자체가 권리 기준선인 것이다.

141 B에 대한 A의 행위가 B에게 해악인지 혜택인지를 결정하는 두 종류의 요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1) B의 이익 곡선에서 그 행위가 미치는 영향

(2) A가 행위한 대로 행위할 의무를 A가 지고 있었는지.

여기서 중요한 논지는 요인(2)가 요인 (1)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만약 도움을 줄 의무가 없다면 우리는 혜택과 해악을 측정할 다른 기준선(즉, 의무가 있었을 때 쓰는 것과 다른 기준선)을 사용하게 된다.

143 B를 도울 의무가 낯선이 A에게 있는 경우에는, B를 도움을 받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은 해악을 가하는 것이다. 즉, A가 손쉽게 B를 돕는 것은 통상적 기준선(normal baseline-바로 그 구조를 받는 기준선) 위로 B의 조건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다. 만일 B가 그러한 구조를 넘어서 돈까지 받았다면 그가 자선을 받았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144 밀이 말한 의미에서 어떤 의무가 불확정적, 또는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다. 즉 도움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개인적 자원보다 도움을 받을 사람의 수가 다수일 때.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웅덩이에 빠진 아이와 낯선 이 사례에서는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조건이다.

만약 두 명의 웅덩이에 빠진 아기가 있다면 어떤가? 이 경우 낯선이는 한 명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두 명 다 구할 수는 없다고 하자. 이 경우 산책자의 의무는 “불완전한” 의무를 닮기 시작한다. 그래서 구조받을 자가 한 명 더 생기자마자 완전히 의무를 면탈하게 된다. 이 역설은 도움을 받을 아기가 더 많게 될수록 더욱 선명하게 된다. 즉, 아기 중 어느 누구도 산책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결론이 더욱 더 설득력이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할 수 없으리 만치 역설적이다. 이것은 특히 자유주의자들을 심란하게 하는데(unsettling)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는 자유주의자로 하여금 세 개의 비밀관된 명제를 받아들일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 형사적 금지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정당성이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따라서 피해자 없는 범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2. 머피Murphy의 산책자 사례 중 두 명 이상의 물에 빠진 아기가 있는 사례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그러나 그러한 사례에서 머피의 산책자는 어느 누구의 권리도 위배하지 않았다.

나는 이 함정을 (1) 명제를 포기함으로써 빠져나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자유주의를 내던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그 자유주의 자체를 옹호하고 있다. (145) 명제 (2)도 던져버리기가 더 쉽다고 할 수 없다. 아기가 한 명 위험에 빠졌을 때에 산책자가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할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서 단지 아기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더 늘어났다고 해서 명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구조 비용 자체를 높이지는 않기 때문이고 또 구해지는 아기가 벗어난 위험의 중대성을 낮추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145 이에 대한 해결은 적어도 한 명의 아기가 정말로 권리를 갖고 있었고 이 권리가 산책자의 고의적인 부작위로 인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이 권리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문제된다.

한 가지 가능성은 각 아이가 산책자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 그 산책자가 비합당한 위험을 스스로에게 초래하지 않고서 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수를 구하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약간 기이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아이를 하나만 구할 수 있었던 산책자가 한 명의 아기를 구하면, 그가 다른 아기의 도덕적 권리를 전적으로 모두 충족시켜주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해석은, 각 아이가 하나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권리가 산책자의 구조 시도를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평등한 배려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평등한 배려에 의한 권리는 산책자가 한 명을 구조함으로써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견해 또한 문제가 있다. 위험에 빠진 당사자에게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음으로써 (즉 아무도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산책자는 완전 평등으로 그들을 대우하였다. 더군다나 만일 한 아이가 남자고 한 아기는 여자, 또는 한 아기는 흑인이고 한 아기는 백인이었다면, 산책자가 편견에 의해 한 명만 구하고 더 이상 구할 수 없었던 다른 아기는 구하지 않았다면(그리고 산책자가 두 명 다 구할 수 있었다면 두 명 다 구했으리라는 점을 이 사례의 조건으로 덧붙인다면), 무시당한 아기의 권리는 그 때문에 침해당하였다는 결론이 된다. 어느 경우에서건, 우리의 원래 사례에서의 산책자에 가해지는 비난은 그가 아기들에게 불평등한 기회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들 각자는 그에 대하여 동등하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146 마지막 해석은 아기들 각자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기 보다는 오직 한 아기만이 부당한 일을 산책자의 부작위로 인해 당했지만, 그 아기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산책자가 한 아기를 구했을 때 모든 아기들에 대한 책무를 달성했다는 합동권리론의 기이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다른 아기들은 산책자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아기를 구했다면 그 아기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셈이 된다. 물론 분명한 결점은 잘못을 당한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명에게는 부당한 일을 했다고 말은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의 수는 특정되나 정확히 피해자의 정체까지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임은 질 수 있다. 이를테면 두 명의 범죄자가 각각 (아무런 의사연락도 없고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50명을 살해시킬 독을 풀었는데 이 독이 피해자 100명에게 도달하는 경로가 마구 복잡하게 뒤섞여서 100명의 피해자가 어느 범죄자에 의해 사망했는지를 밝혀낼 수 없다 하더라도 각 범죄자는 각 50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마지막 해석은 전통적인 형벌 책임론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독을 푼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풀지 않아야 하는 독을 풀지만 않았다면 50명은 살았다. 그러므로 50명이 누군지 정체가 꼭 집어서 밝혀지지 않더라도 50명의 권리를 위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책자는 1명을 구해야 하는데 1명을 구하지 않았다. 누군지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1명의 권리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해결책 역시 단점이 있는데, 이를테면 유족을 생각해보자. 1000명의 아기 중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유족이 갖는 도덕적 불만은, 2명의 아기 중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1명의 아기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갖는 도덕적 불만과 강도가 다르다. (후자로 갈수록 강도가 증가한다)

더 큰 단점은, 동일한 거리에 있는 아기가 두 명 있을 경우, 이 두 아기 사이에 도덕적으로 유관한 아무런 차이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아기만이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는

점이다.

147 따라서 이것은 권리의 언어를 자의성으로 치명적으로 오염시키게 된다.

그래서 나의 선호(파인버그의 선호)는 첫번째 종류의 설명의 한 변종이다. 이것은 일손이 부족한 구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주장에 따르면, 머피의 산책자는 불완전한 의무만을 갖고 있다. 즉,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아기를 구하기만 할 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된다. 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아기는 구하고 한 아기는 죽었다면 그는 어느 아기의 권리도 위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은 아기는, 산책자가 최대한 많은 수를 구하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권리주장만 가지고 있었으며 그 권리주장은 존중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두 명의 아기 모두를 구하지 않았다면, 어느 아기에게도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는 그러한 대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그렇다면 이 두 명의 물에 빠져 죽은 아기 중에서 누가 그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인가? 그에 대한 답은 그 산책자가 구했다면 구조되었을 그 아기 한 명이지만 우리는 그 아기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봤듯이 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148 요약해서 말하자면, 부족한 자원을 갖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의 원조를 동등하게 구할 자격이 있는 이들 중 일부만 할 수 있는 한 구함으로써 그의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아무도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된다. 그가 선별 절차를 어떻게 자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았으므로 그의 의무를 위배했다면 그는 그가 구할 수 있었던 숫자의 일부 아기, 즉 일부 사람에게 대하여 그 부작위에 뒤따른 해악을 가한 책임이 있다.

150 최소한의 적정 수준의 구조는 그 정의상 의무를 넘어선 행위가 아니다. 의무를 넘어선 행위는 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대부분의 행위보다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나 앰블런스를 부르거나 조그만 아이를 물에서 간단히 끄집어 올리는 것엔 그러한 힘든 일이 없다. (not supererogatory)

150 3. 매콜리 경의 선긋기 어려움 문제(Lord Macaulay)

도움이라는 적극적 행위 그 자체(a positive act of assistance as such)가 “단지 혜택의 수여”(mere conferral of benefit)라는 견해에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그 자체”라는 요건 부가 문구가 중요하다. 이 문구를 담고 있는 견해를 거부하는 것은, 설사 일부 도움 행위가 자서낙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선적인 것이 되는 이유는 도움이라는 적극적 행위로서의 지위 때문에 간단히 그리고 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 설득력 있는 견해는, 유럽 국가들의 법률들에 의해 명해지는 최소한으로 적정한 사마리아인적 행위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험에 빠진 사람의 도덕적 권리와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율법적으로 이러한 의무가 강제되는 방식으로, 동시에 그들의 실제 도덕적 의무 이상 그것을 넘어서서 행위를 수행하게끔 다른 맥락에서 명하게 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정식화를 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5 이 논변은 유명한 미끄러운 경사면 논변의 경험적 판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기보다는 이 논변은 미끄러운 경사면 논변의 논리적 판본과 유사한 것을 활용한다. 그것은, 가장 최소

주의적인 법령이라도, 부적절하게 강제되는 자선의 집합으로부터 강제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의 집합을 적절하게 경계지우는 명료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말이다. 즉, 원리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한계를 이 사마리아인적 영역에서 굿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매콜리(Macaulay)의 방법은,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 중 처벌가능한 사례와 처벌할 수 없는 사례의 명확한 사안들을 열거하고 나서, 사례들 자체로부터 암묵적이 원리를 추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처벌가능한 누락의 명확한 사례(punishable omissions)는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음식을 주기를 거부하여 수감자가 감방에서 굶어죽는 것, 간호사가 자기가 돌보아야 하는 아기에 연결된 수분 공급 튜브가 빠졌는데도 내버려두는 것이다.

(152) 처벌불가능한 것으로 명료한 사례로는, 거지에게 적선하지 않아 거지가 그 다음 순간 죽었다고 하여 그 적선 안한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의사가 인도에서 어떤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을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캘커타에서 Meerut로 수술하러 날아가기를 거부한 사람이 살인죄로 기소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군의 사례는 어떻게 다른가? 교도관은 법적 의무를 할당받았고 간호사는 그런 것을 하라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반면에 후자의 사례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매콜리는 해로운 부작용은, “그러한 부작용이 다른 근거에서 불법일 때에” 처벌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런데 낯선이의 부작용을 다른 근거에서 불법으로 볼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매콜리는 말한다. 매콜리는 그런데 왜 “공통된 인간성”에 기초한 권리주장이 적극적인 도움 의무에 대한 권리주장의 기초가 될 수 없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153 관계없는 지나가던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법에서 그것을 구조할 의무를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된 인간성이라는 관계에 기초한 의무를 인정해야 하느냐가 정확히도 쟁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매콜리는 또, 부작용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확대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은, 그런 형사적 책임을 지우지 않았을 때보다 더 반직관적인 결과에 도달한다고 한다. 리빙스톤의 공식인 “인신의 위험이나 금전상의 손실” 없이도 할 수 있었는데도 위험에 빠진자를 돕지 않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공식에 대하여, 매콜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반대한다. 이를테면 캘커타 의사의 경우, 비행기값이나 통상 수술비 등 모든 금전상으로는 이득이 되도록 제의를 하기만 하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리빙스톤의 공식을 “큰 불편”이라는 요소도 포함시킴으로써 고칠지 모른다고 반응하면, 매콜리는 그것도 여전히 문제를 남겨둔다고 한다. 이 경우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작은 돈을 주지 않았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리빙스톤의 공식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매콜리의 두 번째 반대 근거는, 그것이 지나치게 관대하다(lenient)는 것이다. 계약 등에 기초하여 특별한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인신의 위험이나 금전상의 손실 큰 불편을 포함하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살인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리빙스톤과 매콜리의 접근 둘의 상대적으로 더 나은 특성들을 결합함으로써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1) 책임을 면제하는 정확한 리스트를 만드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비합당한(unreasonable) 위험, 손실 불편이 구조자에게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고치고 (2) (154) 특별한 관계에 부가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이루어

질 수 있다.

매콜리는 “비합당한” “과도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 용어로는 정치한 기준의 원칙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155 그러나 나쁜 사마리아인 법을, 경고, 조력, 보고, 구조를 어떠한 위험도 비용도, 또는 어떠한 불편도 없이 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는 조금이라도 비용이나 불편이 들어가긴 하기 때문이다.

156-157 더 나은 방법은 가상적 사안을 세 집합(명백, 불확실, 명백히 비합당)으로 나누어서, 명백히 어떠한 비합당한 위험, 비용, 불편도 없는 경우에만 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1집합과 2집합 사이의 선을 활용) 이러한 구분선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방위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 법에서만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158 매콜리는 1837년의 인도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 그 당시 인도에서는 매년 영양실조와 기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경우 부유한 사람이 거지와 마주칠 때마다 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 경우는 그러나 나쁜 사마리아인법의 경우와는 다르다. 나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한 번의 도움 제공으로 해당 절박한 위험에서 영원히 구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 대상과 구조해야 할 사람도 특정되어 있다. 반면에 매콜리가 염두에 둔 인도 상황에서는 적선을 한다 해도 단지 비극을 잠시 늦추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적선은, 모두에 대한 도움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에 대한 도움을 줌으로써 불완전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론적으로 모두에게 자기 소득의 고정된 비율을 적선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정의 문제(coordination problem)가 생긴다. 많은 거지들이 굶어죽으면서도 어느 누구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며, 많은 이들이 혼동 속에 간과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많은 적선을 받게 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적선을 마주칠 때 일정비율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정 문제는 복지국가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불완전한 의무를 납세에 대한 완전한 의무로 변형시킴으로써 해결된다. 이 경우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공정한 몫을 납세를 통해 기여한 것이 된다. (복지 체계가 충분하다고 할 때)

159 그러나 이러한 복지체계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쁜 사마리아인 법의 상황이다. 무작위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목숨의 위급상황의 발생은, 단순히 국가 체계가 돈을 건어서 전문적인 대처기관을 통해 대처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구조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에는, 조정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무수행자를 지정하거나 부담의 크기를 정함에 있어 불공정이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매콜리가 염두에 둔 적선 상황과 나쁜 사마리아인 법의 취지, 맥락, 그리고 구조적 차이를 혼동하고 전자의 형사처벌불가능성을 이유로 후자에도 형사처벌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다.

4. 누락(Omissions) 및 다른 부작위들.

매콜리는 부작위 중에서도 잘못된 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만이 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의무가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것인데, 구조 의무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어떤 관계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구조 의무가 없다고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조건들을 명세해보면 다음과 같다.

1. A는 X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
2. A는 X를 할 합당한 기회가 있었다.
3. A는 X를 할 능력이 있었다.
4. A는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며 그가 그 사람을 구할 충분한 능력과 합당한 기회가 있다는 점을, 적어도 높은 확률이 있다 의미에서, 믿었다.

161 그러나 위 조건만으로는 이웃이 휴가를 떠났는데, 이웃사람이 사랑하는 꽃들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어서 아주 손쉽게 물을 줘서 그 실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은 경우까지 해당된다는 점에서는 의무의 완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 5가 덧붙여진다.

5. A가 X를 다음과 같은 이유들 중 어느 하나 때문에 그 여건에서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당하였다.
 - a. A 또는 A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통상 X를 한다 또는
 - b. A는 그의 직업, 사회적으로 할당된 역할, 또는 B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X를 할 특별한 의무가 있었다. 또는
 - c. A는 B와의 사이에 사전의 합의에 의거하여 또는 약속의 준수에 의거하여 X를 할 도덕적 책무가 있었다. 또는
 - d. 어떤 다른 이유에서, A의 입장에 처했음을 인식한 사람은 X를 할 도덕적 명령 하에 있다.

162 특히 나쁜 사마리아인 법의 상황에서는 위 5의 d 조건은 B가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등의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에 징표된다.

일상언어에서 추론해버리는 사람들이 야기하는 난점을 피하기 위해, 의무나 책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도덕적 명령(moral requirement)라는 용어를 썼다. 이 도덕적 명령을, 특수한 관계는 없으나 '공통된 인간성'에 근거하여 생기는 의무로 생각할 수 있겠다.

163 더 나아가, 이러한 '명령'에, 사마리아인 상황에서 위험에 빠진 당사자는, 상응하는 확정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의 부작위자는 위험에 빠진 당사자를 구하는 것을 누락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5. 구조하라는 법적 의무는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가?

부당한 간섭이라는 논증은, 자유 제한은 그 제한에 찬성하는 이유와 제한에 반대하는 이유 사이에 비례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비합당한 위험, 불편, 비용을 수반하는, 경찰을 부르거나 앰بول런스를 부르거나 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그 규정의 본질상 소극적인 자유 영역 제한보다 더 제약적인가? 명백히 그렇지 않다. 어떤 적극적 의무들은 매우 침입적일 수도 있다. 많은 적극적 의무들은 거의 침입적이라고 볼 수 없다. 금지도 마찬가지다. 어떤 금지는 아주 부담이 되는(onerous) 것이고 어떤 것은 거의 그렇지 않다. 이 차이를 설명해주는 것은 그

법적 규제가 “적극적 의무 지우는 것”이나 “소극적 금지하는 것”이나 이외의 요소이다. 만일 법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환자를 보라고 의사에 명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침입적인 것이지만, 맨홀에 빠지기 직전인 장님에게 한 발 딛기 전에 경고하게끔 하는 것은 오직 음성의 발화만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거의 침입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164) 이와 유사하게, 학교 구역에서 시속 10마일 이상으로는 차를 몰지 못하게 하는 법적 금지는, 일정구간을 50마일 이상을 달리 게끔 강제하는 법률보다 더 침입적이다. 즉 더 침입적이냐 덜 침입적이냐를 따질 때 보는 것은 그 규제의 형태가 적극적인 것이냐 소극적인 것이냐가 아니라, 규제 대상의 선택지(option)에 미치는 영향인 것이다. 토머스 게리(Thomas Gery)는 빨간 불일 때 우회전 못하는 것보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경찰에 전화하라는 것이 더 자유 박탈이냐고 수사적으로 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마리아인법이 통상적인 형법적 금지보다 더 침입적이라는 불평에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나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적 의무가 언제 갑자기 우리에게 지워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사태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65 물론 그런 상황에 실제로 처하게 되는 것은 운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범죄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기여하지 않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라는 법적 의무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적극적 법적 의무(증언)나 도덕적 의무(부모 부양의 의무)에 비해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 의무라는 특성만 가지고 사마리아인법이 자유주의자에게 혐오스러운 ‘도덕의 강제’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오류다. 도덕의 강제는 통상 권리 보지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태나 행위, 부작용을 명하는 것인 반면에, 나쁜 사마리아인 법 상황에서는 구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자가, 위험에 빠진 특정인으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조의 의무는 이 사람의 도덕적 권리에 대응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도 ‘피해자 없는 범죄’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6. 인과관계의 도덕적 중요성

도덕적 차이 주장: 부작용에 의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둔 것과, 작위에 의해 결과에 기여한 것은 도덕적 차이가 있다.

167 이에 대한 직관적 반례. 심장병에 걸린 사람이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서 약병을 더듬더듬 손으로 잡으려는데, (i) A가 그 심장병 환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약병을 밀어버리고 그가 죽는 경우와 (ii) A가 손끝으로 조금만 밀어주면 심장병 환자의 리치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죽게 내버려두는 것 사이에는, 작위와 부작용의 차이가 있지만, 도덕적으로 유관한 차이가 거의 없다.

물론 이런 대칭적인 예 말고 비대칭적인 예도 있다. Heidi Malm이 기술한 사례다. 행위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나 위험이 부작용을 정당화하는데는 충분한 정도로 크면서도, 동일한 양의 비용이나 위험이 작위 금지를 깨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하면 나의 건강에 대한 위험이 당신이 살기 위해 신장이 필요한데도 신장을 기증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건강의 위험이 당

신의 신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납치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1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하면 나는 그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하기 위해 1000달러를 써야 한다 하면 그것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Malm은 개인의 자율성에 부여하는 높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개인의 자율성 자체가 그런 비대칭성을 집약한 가치이므로 이는 순환에 의한 설명일 수 있다.

어쨌거나 나쁜 사마리아인 법은,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사례보다는 대칭성이 존재하는 사례에 가깝다. 왜냐하면 나쁜 사마리아인 법은 어느 누구의 중요한 이해관심이나 목적을 위협에 빠트릴 것을 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맘이 제기한 문제는 답해야 하는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어낸다. 만일 대칭성에서 사마리아인 법의 정당성을 논구한다면, 그리고 그 대칭성은 우리가 지는 위험과 위험에 빠진 당사자의 죽음이나 불구의 즉각적인 위험의 형량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불편이나 비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확실한 해악에 비추어 더 무겁게 있기는 힘들지 않는가? 그것이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나 신체적 해를 우리 자신에게 끼치지 않는 선까지 어떤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를 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적극적’ ‘소극적’ 구조 차이를 이름으로 지적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설명을 전환하여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런 식이 아닌 설명을 찾아내자면 조정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즉, 적극적 의무의 부과는 해결할 수 없는 조정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의무를 부과받는다 것은 사회적 규칙에 의해 어떤 몫을 할당받는 것인데, 이것은 행위자들 사이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조정 몫 자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동등한 할당을 전제하는 것이다. “도로 어느 쪽에서 달려야 하는가?”의 문제는 어느 쪽에서 달리는지에 관하여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합의한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소극적 의무 부과는 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70 살인하지 않는 것을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 반면에 적극적 의무는 완전히 의무를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동료 시민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이 없으면 불공정과 혼란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내가 나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해악 예방을 최대화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사회가 집단적으로 그 의무를 선취하여 각 사적 개인들에게 공정한 몫을 재할당했기 때문이다. 집단적으로는 우리가 심각한 해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각자 돌아갈 몫으로 치러야 할 비용에 어떤 한계는 없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구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위험이 수반된다고 할 때, 개인으로서 그것을 근심하며 옆에서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의 구조 시도는, 정치적 기관이나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의 책임을 할당받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집단적으로 우리는 한 아이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즉 상당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할 만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어느 선 이상을 못넘어가게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각자 개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악 예방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조정되지 않은 난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 체계는 사회적으로 자멸적(self-defeating)할 것이며, 필요한 도움을 받거나 자신이 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부담을 집에 있어서 심각한 비형평성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 각자는 불을 발견했을 때 소방서에 전화를 걸 의무가 있다. 그것을 넘어서서는 불을

직접 끄야 할 의무는 없다. 그것은 숙련된 전문가로서 특수한 책임을 할당받은 이들이 할 일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불이 났다고 신고는 해야 하지만 직접 불을 끌 의무는 없는 이유는, 단순히 한 사안에서는 최소한의 노력만 필요한 반면 다른 사안에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기 보다는, 그것이 부담과 특수 과업의 몫을 미리 분업화해서 나눔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게 불을 끄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매우 엄밀한 사회적 의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다. (171) 즉 적극적 의무는 소극적 의무와는 달리,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몫으로 할당되며, 적절한 전문기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개별 사안에 적극적 과업 수행의 부담이 모든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똑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 전체로 보았을 때는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되며 가장 형평성있게 부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업과 조정 체계로도 면제될 수 없는 의무가 있으니, 바로 그러한 조정과 분업 체계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 즉 당면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비합당한 비용이나 위험 짐이 없이 전문 기관에게 알리거나 시간이 급박할 때는 할 수 있는 쉬운 구조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정 문제 없이 완전히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사회 패턴상 불공정하게 몰아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7. 누락의 결과

만약 조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부담이나 비용,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에 도덕적 대칭성 명제가 성립한다면, 인과관계 국한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사마리아인 법 반대 주장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도덕적 대칭성 명제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인과관계가 작위에 국한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흥미로우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험의 비방지가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만일 있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한가?

여기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그 부작용자가 작위를 할 도덕적 명령 하에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즉,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173 C가 밀고 B가 빠지고, A는 B가 싫어서 구해주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자. 조건적 인과관계로 파악하자면, A가 (1) 구하기 노드를 탔으면 B는 산다는 결과가 초래되고 A가 (2) 안구하기 노드를 탔으면 B는 죽는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A의 (2) 안구하기는 B 죽는다는 조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A의 안구하기는 B의 죽음에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반론이 있다. 즉, A가 만일 현장에 없었더라 할지라도 B는 여전히 죽었을 것이라는 소리다. (174) 그러나 A는 현장에 있었다. 사정이 다른 걸 상정하고는 원인이 아니라고 하면 안된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A의 안구하기는 B의 죽음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여기에 관련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런 저런 방식으로 사건 진행에 영향을 미칠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태가 뒤이어 일어난 방식은 그 힘이 행사된 방식의 결과라는 것이다.

인과적 요소

인과관계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유관한 인과적 요인이나 하는 점이다. 모든 필요조건이 인과적으로 유관한 요인은 아니다. 과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이는 개념

논리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속을 하다가 우연히 넘어지는 나무를 피하는 경우에도 과속은 그 사건의 필요조건이기는 했다. 그것은 우연한 전제가 된 것이다. 이 두 경우 어느 경우도 책임을 따질 때 유관한 인과조건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A가 구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력을 갖고 있으면서 구조하지 않은 경우 B의 죽음에 A가 구조를 하지 않는 쪽으로 힘을 행사한 것은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원인은 되는 것이다. 그래서 A의 부작위는 누락으로 기술될 수 있고, 그러한 누락은 B의 죽음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과성을 말하는 것은 세 가지 맥락에서 이야기한다.

1) 설명을 위해서 (왜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는가? 왜 물체는 떨어지는가? 왜 꽃은 봄에 피는가?)

2) 공학적 관점에서 - 탐구를 발생시킨 사태를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취급, 파악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인과적 요인을 찾는 것이다.

3) 책임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 인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요소는 배제하는 고려사항을 도입하는 것. (예를 들어 다리에서 사람을 빠트렸을 때 수면이 깊었다는 여기서는 유관한 것으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는다)

1)을 손전등(lantern) 기준 2)를 손잡이(handle) 기준 3)를 오명(stain) 기준이라고 부를 수 있다.

178

B가 다리에서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진 사건을 살필 때

손전등 기준으로 보면, B는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 죽었다.

미래의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손잡이 기준으로 보면, 다리의 난간을 보수해야 한다.

오명 기준으로 보면, A가 근처에 있어 손쉽게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하지 않은 누락은 B의 죽음의 한 원인으로 유관하다.

179

이렇게 인과관계를 묻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인과관계 인용이 달라지며, 인과관계 인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무맥락적인 단일한 하나의 기준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지 않는 요소들은 언급되지 아니한다. 즉, 손전등 기준, 손잡이 기준, 오명 기준에서 통상 물의 깊이라든가, 물의 흐름의 세기 같은 것은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다.

B가 병원에서 박테리아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되어 사망했을 때도,

손전등 기준으로는 박테리아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고,

손잡이 기준으로는 다른 병원과 그 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시설 등을 살펴볼 것이고,

오명 기준으로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제때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작위의 결과로서 B의 죽음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나 간호사는 그러한 검사와 의료적 처치를 할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야기'라는 용어가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기여에만 쓰이는 용법 때문에 혼동이 생긴다. caused. 그러나 한 원인이 되었다 (it was a cause)라고 본다면, 오명 기준으로 볼 때 부작위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누락이 되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장 요약 끝>

